

실적보고 증명서류 첨부기능 - FAQ -

- Q. 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시 처리실적 증명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, 증명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
- A. 처리실적 증명서류는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써, 올바로 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 1575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Q. 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시 공사가 2개년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연도별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처리실적 증명자료를 준공년도에 한번만 첨부하면 되는 건가요?
- A. 세금계산서를 연도별로 발행하기 어려운 경우 '양식 내려받기'를 통해 연도별로 처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Q.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시 첨부파일은 비법정만 제출해도 되나요?
- A. 4개의 법적 증빙자료와 4개의 비법정 증빙자료는 동일하게 처리실적 증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Q.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첨부파일 증빙은 1월1일 이후 공사시작 건만 해당하는 건가요?
- A. 1월1일 이후 공사시작 건이 아닌 실적보고를 1월1일 이후 제출건부터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.
- Q. 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시 세금계산서 등 대금을 운반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처리실적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?
- A. 운반자와 계약을 한 후 운반자가 처리자 대금까지 같이 청구할 경우 대표자인 운반자에게 지급한 세금계산서나 처리실적 증명자료의 경우 운반자의 확인(날인)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Q. 발주자가 외주공사업체에게 도급을 준 상황에서 배출자 신고를 할 때 외주공사업체만이 처리자와 계약을 맺어 처리자와 계약을 맺지 않은 발주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렵습니다. 처리자가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아 처리량만 알려준다고 할 때 효력이 있는 건가요?
- A. 외주공사업체와 맺은 계약서 1부와 외주공사업체와 처리자간의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해당 방법이 어려운 경우 처리량이 기재된 처리실적 증명양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처리자 날인 필수)